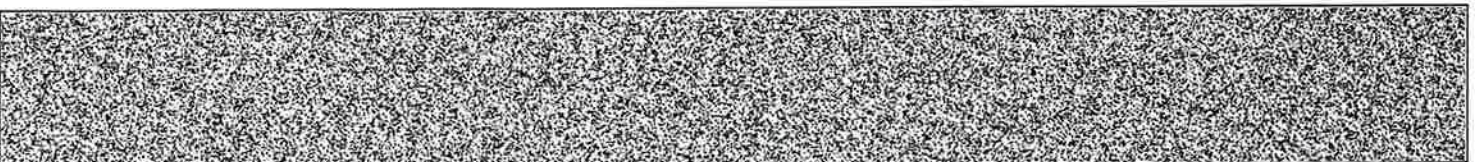
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[제출용]

등기번호	804916		
등록번호	110111-8049169		
상 호	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8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		.
본 점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		.
공고방법	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와 일간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.		.
1주의 금액	금 5,000 원		.
발행할 주식의 총수	20,000,000 주		.
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		자본금의 액	변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
발행주식의 총수	60,000 주	금 300,000,000 원	.
보통주식	60,000 주		.
발행주식의 총수	2,620,000 주	금 13,100,000,000 원	2021.12.16 변경
보통주식	180,000 주		2021.12.16 등기
종류주식	2,440,000 주		
발행주식의 총수	2,560,000 주	금 12,800,000,000 원	2021.12.27 변경
보통주식	120,000 주		2021.12.27 등기
종류주식	2,440,000 주		
목 적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 부투법 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 운용과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 1. 부동산의 취득, 개발, 개량 및 처분 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 2. 부동산의 관리(시설운영을 포함한다), 임대차 및 전대차 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 3. 부동산의 개발사업 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 4. 증권, 채권의 매매 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 5. 현금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 6. 지상권,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의 취득, 관리, 처분			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등기번호	804916
------	--------

	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
7.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의 취득·관 리·처분	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
8.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부투법에 따른 대출, 예치	<2021.10.22 삭제 2021.10.25 등기>
(1)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(이하 부투법이라 한다)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1.부동산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2.부동산개발사업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3.지상권·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4.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5.증권, 채권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6.현금(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)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(2)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투자 ·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그 자산의 투자·운용과 직접 관련 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.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1.취득, 개발, 개량 및 처분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2.관리(시설운동을 포함한다), 임대차 및 전대차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3.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대출, 예치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4.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	<2021.10.22 추가 2021.10.25 등기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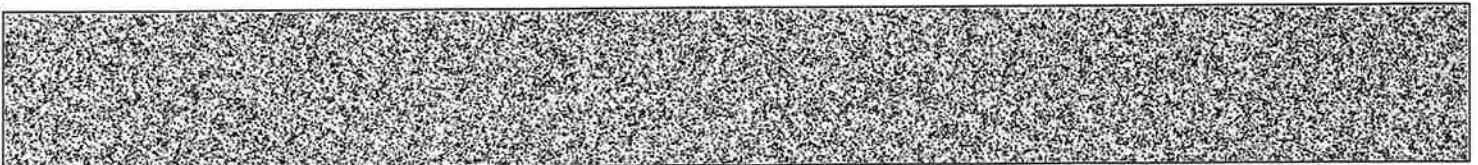
임원에 관한 사항

사내이사 박영희 750103-*****
대표이사 박영희 750103-*****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2, 329동 1901호(원문동, 래미안슈르)
기타비상무이사 김연화 801218-*****
2022년 06월 14일 사임 2022년 06월 14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정현섭 801106-*****
2022년 06월 14일 사임 2022년 06월 14일 등기
감사 김정현 761005-*****
기타비상무이사 민철기 750223-*****
2022년 06월 14일 취임 2022년 06월 14일 등기
기타비상무이사 마필은 870206-*****
2022년 06월 14일 취임 2022년 06월 14일 등기

종류주식의 내용

종류주식

- ①회사는 종류주식을 오백만 (5,00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
 ②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
 1.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04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
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



등기번호	804916
------	--------

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

③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

④ 어느 사업연도의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류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
⑤ 본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

1. 최우선으로, 해당 사업연도의 이전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2.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04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

3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잔여 배당가능이익의 60%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, 나머지 4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⑥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

1. 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2.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3.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4.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60%를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, 나머지 4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
2021년 12월 16일 설정 2021년 12월 16일 등기

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오백만 (5,000,000)주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

② 회사는 이익배당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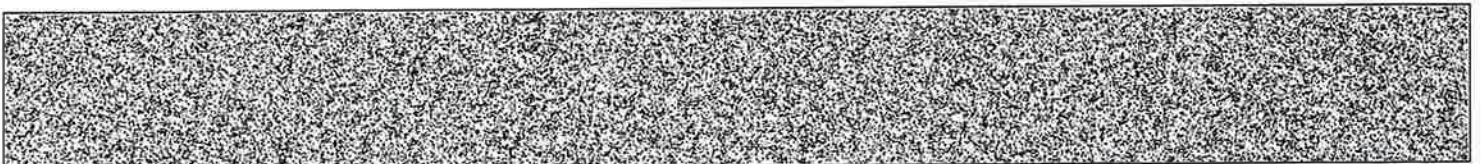
1. 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04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

2. 제1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, 보통주식에 대하여 각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당한다.

③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항에 정한 배당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해당 종류주식의 이익배당액에 추가하여 배당한다.

④ 어느 사업연도의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류주식은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에 참가하지 아니한다.

⑤ 본 정관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,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는



등기번호	804916
------	--------

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한다.

1. 최우선으로, 해당 사업연도의 이전 어느 사업연도에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2. 종류주식에 대하여 1주당 1주의 발행가액에 연 4.04%의 비율을 일할 계산하여 곱한 금액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배당한다.

3. 제2호에 따른 배당 후 남은 잔여 배당가능이익의 60%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, 나머지 4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4. 제3호에도 불구하고, 제3호에 따라 보통주식에 분배할 금액 중 보통주식 발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 전체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⑥ 회사 청산시 다음과 같이 잔여재산을 분배한다.

1. 최우선으로, 종류주식에 대하여 누적된 미배당분이 있는 경우, 그 미배당분을 해당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2. 제1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종류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3. 제2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보통주에 대하여 발행가액 상당액에 달하는 만큼을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4. 제3호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잔여재산 중 60%를 종류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하고, 나머지 40%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5. 제4호에도 불구하고, 제4호에 따라 보통주식에 분배할 금액 중 보통주식 발행가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 전체에 대하여 그 주식수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분배한다.

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 또는 보통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.

2022년 04월 07일 변경 2022년 04월 14일 동기

기 타 사 항

1.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.

1. 주주총회의 해산결의

2. 합병

3. 파산

4.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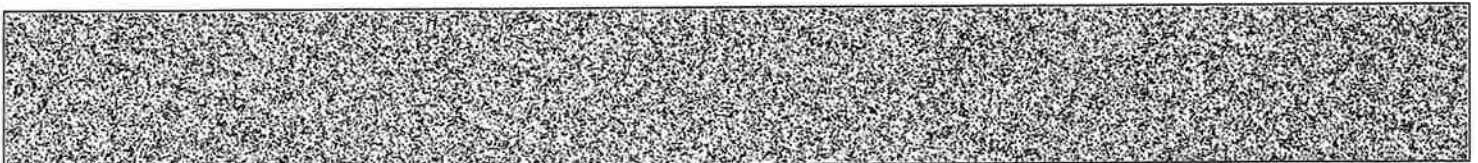
5. 영업인가의 취소 또는 등록의 취소

6.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

7. 회사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

회사성립연월일

2021년 10월 08일



등기번호	804916
------	--------

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	2021 년 10 월 08 일 등기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-- 이 하 여 백 --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/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수수료 1,000원 영수함



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.
[다만, 신청이 없는 지점·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]
서기 2022년 06월 17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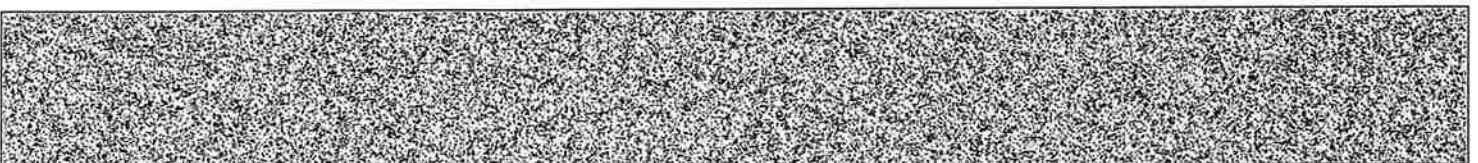
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

전산운영책임관



- 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- 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[인터넷 발급]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,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·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


발행번호 11300090454010701261002220062119047018K1T1N1Q0U1D1 2

발급확인번호 9164-AAWE-LUHI

발행일:2022/06/17